

[2022년 2월 13일 이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]

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
□ 지원대상자

- 코로나19 확진 입원 또는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

(신청대상자 중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.)

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,
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
※ **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.**

□ 지원대상자 가구원 수 인정 범위

-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

* 주민등록표상 가족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과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됨

□ 지원 제외 대상

-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
-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(공무원,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등)

□ 구비서류

확진자·자가격리자 중 **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자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분은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님.**

○ 본인 또는 미성년자 자녀 대리(부모) 신청시

- 생활지원비 신청서
- 자가격리 통지서, 입원 또는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확인서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
- 직장인 중 유급휴가 미사용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
(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)

○ 성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대리 신청시

- 생활지원비 신청서
- 자가격리 통지서, 입원 또는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확인서
- 신분증 및 **확진자 또는 격리자 본인통장 사본, 위임장**
- 직장인 중 유급휴가 미사용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
(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)

※ **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.**

※ **생활지원비 확진·자가 격리기간 14일~30일까지는 금액 같음
확진자 중 재택치료자 추가지원비는 10일 이후 금액 같음**